

고가의 설계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- 29개 모듈 중 일부 사용 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:

서울고등법원 2018. 12. 20. 선고 2017나2031928 판결



## 1. 기초사실 및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청구 금액

- (1)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 Creo 제품, 29개 모듈,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
- (2) 단속 적발로 해당 직원과 회사법인에 대한 각 벌금 2백만원 형사판결 확정
- (3)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주장 요지 - 29개 모듈 풀버전 가격 합계 약8억3천만원, 민사소송으로 그 중 일부 청구로서 1억5천만원 청구

## 2. 법원의 손해배상액 판단

(1)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3073 판결 - 손해배상액 약 1억2천만원

인정

(2) 항소심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1928 판결 - 손해배상액 2천만원 인정

### 3. 서울고등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판결이유

#### 2) 손해배상책임의 범위

##### 가)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한 산정 여부

(1)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,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1. 6. 26. 선고 99다50552 판결 참조).

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피티씨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프로이 5.0의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① 프로이 5.0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,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었다.

② 사용자가 불법복제시 활성화된다고 원고 피티씨가 주장하는 프로이 5.0 또는 크레오 프로그램 중 29개 모듈 전부를 구매한 사례는 없다.

③ 원고 피티씨의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의 크레오 프로그램 판매 내역에 의하면, 사용자들은 통상 4개에서 9개 모듈을 구매하였는데(갑 제24 내지 30호 증), 위 판매금액에는 1년간 유지보수비용이 포함되어 있고, 판매된 모듈의 구성은 크레오 에센셜 팀이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 외에는 사용자의 업종, 업무 내용에 따라 모두 다르고, 일부 할인도 적용되어 있다.

#### 나)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

(1)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(저작권법 제126조).

(3)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갑 제6, 24 내지 30호증, 을 제1호증의 4,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당심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원고 피티씨의 손해액은 20,000,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.

① 원고 피티씨는 프로이 5.0 또는 크레오 프로그램에 관하여 사용자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는데, 사용자는 한 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위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(이른바 Paid-up 방식).

② 만약 피고들이 업무를 위하여 원고 피티씨로부터 프로이 5.0을 정식으로 구매한다면 프로이 5.0의 모듈 전체를 구매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.

③ 피고 회사는 반도체장비 제조 판매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2005. 1. 7. 프로이 2.0 2개를 47,000,000원에 구매하여 사용하였는데(을 제1호증의 4), 당시 어떤 모듈을 구매하였는지 알 수는 없다.

⑤ 피고 B은 C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설계도면 파일을 열어보기 위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과거 구매하였던 프로이 2.0을 지급받았으나, 위 프로그램의 버전이 낮아 위 설계도면 파일이 열리지 않자 프로이 5.0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받아 위 설계도면 파일을 열람하였는데, 위와 같은 설계도면 파일을 열람함에 있어서는 프로이 5.0 중 적어도 기본모듈(PKG-3512-F, 피고의 2017. 4. 20.자 준비서면에서 제시한 Pro/Engineer Foundation XE 또는 크레오 에센셜로 기재되어 있다. 이하 '크레오 에센셜'이라 한다)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.

⑥ 원고 피티씨가 2017. 4. 20.자 준비서면에서 제시한 모듈 가격은, 위 견적서 등에 비추어 보면 2016년 또는 2017년 기준 가격으로서 유지보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이는데, 이를 기준으로 한 크레오 에센셜 모듈 1개의 가격은 14,281,000원이다.

⑦ 원고 피티씨는 2016. 5.경 크레오 에센셜 팀 모듈 1개(모듈 가격은 18,138,000원이고 1년 유지보수비 3,297,900원을 포함하면 21,435,900원이다)를 포함한 8개 모듈을 판매하면서 별도로 크레오 에센셜도 13,601,000원(1년 유지보수비 2,062,600원을 포함하여 15,663,600원)에 판매하였다.

⑧ 한편 피고들은 위 프로이 5.0의 불법복제물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므로, 원고 피티씨로부터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다.

기술법무, 저작권, 영업비밀, 계약분쟁, 손해배상, Claim, License, R&D 제휴계약

---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